##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09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 한정애·김성회·이학영

추미애 • 박홍근 • 양문석

조정식 • 권향엽 • 김교흥

서영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를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 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 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이하 "기후변화"라 한다)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

- ③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 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제9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

제68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 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 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 변화적응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 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

- ③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 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7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여 야 한다.
-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제6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 제73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대응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	제16조(예산의 원칙)
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6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	
스"라 한다) <u>감축에</u> 미치는	<u>감축과 배출 및 같</u>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후변화(이하 "기후변화"라 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다)에</u>
제27조(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서	제27조( <u>기후위기대응</u> 예산서의
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	작성) ①
실가스 <u>감축에</u> 미칠 영향을 미	<u>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u>
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 <u>온실</u>	<u>에</u>
<u>가스감축인지</u> 예산서"라 한다)	<u>기후위기대응</u>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② <u>기후위기대응</u>
감축과 배출 및 기후
변화에
<u>.</u>
③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
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
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탄
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
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 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u>⑤</u> 기후위기대응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9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서 10. ~ 16. (생 략)

제57조의2(<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u>감축하는</u>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u>온실가스감축인</u> <u>지</u>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에 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u>감축</u> 효 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u>감축에</u>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 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기후위기대응</u>
10. ~ 16.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 <u>기후위기대응</u> 결산서
의 작성) ①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u>기후위기대응</u>
② 기후위기대응
감축과 배
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제68조의3( <u>기후위기대응</u> 기금운
용계획서의 작성) ①
감축과 배출
<u>및 기후변화에</u>
기후
 위기대응
② 기후위기대응
감축과

대한	기대.	효과,	성과목	' 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하다	1.

<신 설>

<신 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 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u>배출</u>	및	기후병	변화?	적응여	<u>게</u>	
<u>(3)</u>	기 ㅎ 여	) 기기기.	<u>o</u> -	カユ	<u> </u>	게 회

<u>③ 기우위기대층 기금군용계획</u> 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 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 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 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 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 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u>⑤</u> 기후위기대응-----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 -----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 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 6. (생략)
- 6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운 용계획서
- 7. (생략)
-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실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 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u>감</u> 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u>.</u>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기후위기대응</u>
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 <u>기후위기대응</u> 기금결
산서의 작성) ①
<u>감축하고 기후변</u>
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u>기</u> 후위기대응
② <u>기후위기대응</u>
<u>감축과</u>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